

#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해당 사업은 소극장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삼일로창고극장('58년 준공)의 역사성 및 시설을 보전하고, 서울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청년예술가(연극인)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,
- 나. 기획력, 행정력, 기술력, 예술현장 이해, 네트워킹 등 고도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서, 청년예술인 지원,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,
- 다.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삼일로창고극장 운영
- 나. 위탁시설 개요
  - 위치 : 중구 삼일대로9길 12
  - 규모 : 대지면적 352.1㎡, 연면적 408.87㎡, 지상 2개동
  - 소유자 : 오○○ 등(민간 소유 건물 임차)

- 개 관 일 : '18. 6. 22.
- 주요시설 : 공연장(50석), 스튜디오(연습실), 사무실, 매표소 등
- 사업내용 : 연극단체 대관 공연 및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체 기획사업 운영

#### 다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3년(2024. 1. ~ 2026. 12.)
- 위탁사무
  - 삼일로창고극장의 공연장 및 부속동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
  -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)

문화예술진흥법 제5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4년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김수연 (☎2133-2579)